


스페인의 가정폭력 대책 고찰을 통한 한국경찰의 대응방안 모색



스페인의 가정폭력 대책 고찰을 통한 한국경찰의 대응방안 모색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경찰연구관 신 동 욱

목 차

I. 서론	1
II. 스페인의 가정폭력 발생 실태 및 한국과의 비교	3
1. 스페인내 가정폭력 발생 실태 및 특징	3
2. 한국과의 비교	5
III. 가정폭력 관련 법제 분석	7
1.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를 위한 종합보호대책법」 개관	7
가. 가정폭력의 정의와 가정폭력의 당사자	8
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환기 규정	11
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	12
라.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관 및 대책에 대한 규정	13
2. 보호명령(la orden de protección) 제도	15
가. 보호명령과 관련한 원칙들	16
나. 보호명령의 내용	17
다. 보호명령 위반 시의 벌칙	19
라. 보호명령 결정과정	20
마. 한국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과의 비교	32
IV. 스페인의 가정폭력 방지대책	35
1. 종합적인 對여성 폭력 척결 전략계획의 수립·시행	35
가. 對여성폭력 척결 전략의 목적	36
나. 對여성폭력 척결 전략의 세 가지 실행축	37
다. 부처별 세부 대책	37

2. 가정폭력 관련 경찰전담기구 운영	38
가. SAF	39
나. UPAP	39
다. EMUME	41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스템 운영 (Sistema VdG o VIOGÉN)	42
가. 가정폭력 관련 기관간의 정보 공유	43
나.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위험성 평가	44
4. 가정폭력 신고 전화(016) 및 휴대단말기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 지원 서비스(ATENPRO) 운영	51
가. 가정폭력 전용 피해신고 전화(016) 운영	51
나. 휴대단말기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 지원 서비스 (ATENPRO)	52
5.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53
V. 결론 및 정책 제언	56
1. 결 론	56
2. 정책 제언	57
가. 체계적인 피해자 위험성 평가 시스템의 도입 및 다기관 협력체계 (가정폭력 Solution Team)의 내실화	57
나. 접근금지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습가해자 전자발찌 착용	60
다.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정비	61
참고자료	64
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 번역본)	
참고문헌	73

표 목 차

<표 1> 연도별 성별간 폭력으로 인한 사망피해자 현황	4
<표 2> 성별간 폭력방지법 서문	9
<표 3>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법과 한국 가특법상의 당사자 비교	9
<표 4>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1편	11
<표 5>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2편	12
<표 6>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3~5편	14
<표 7>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신청권자 비교	21
<표 8> 스페인의 보호명령과 한국의 피해자보호명령과의 비교	33
<표 9> 對여성폭력 척결 전략 중 세부 대책(경찰관련 예시)	38
<표 10> 기관별 VDG시스템 사용자 현황	44
<표 11> VPR 입력시 질문표	46
<표 12>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경찰의 보호조치	47
<표 13> VPER평가지 질문표	48
<표 14> 위험진단·평가결과에 따른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 면담·보호 주기 ...	50
<표 15>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선정 시 착안사항	57

그 림 목 차

<그림 1> 스페인의 연도별 성별간 폭력 피해자 현황	3
<그림 2> 보호명령신청서 1면	22
<그림 3> 보호명령신청서 2면	23
<그림 4> 보호명령신청서 3면	24

<그림 5> 보호명령신청서 4면	25
<그림 6> 보호명령신청서 5면	26
<그림 7> 한국의 임시조치 신청서	27
<그림 8> 한국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	28
<그림 9> 피해자보호명령의 처리 절차	31
<그림 10> VDG시스템의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체계도	43
<그림 11> VPR입력 화면	46
<그림 12> ATENPRO서비스	53
<그림 13> 전자발찌 및 피해자용 단말기	54

I. 서론

박근혜정부의 주요 치안정책으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경찰, 검찰 및 관련 정부부처는 4대 사회악 척결활동에 진력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그러하듯 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도 경찰이나 관련 부처가 주로 주목하는 외국의 사례는 영미에 치중되어 있다. 영미를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에서 1970년대 여권신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가정폭력과 관련한 수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영미의 경찰, 특히 미네아폴리스 실험으로 대표되는 체포우선주의 정책과 같은 선도적인 정책들을 실시하고 정착시켜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영미처럼 여권신장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 국가이외에도 스페인, 중·남미, 아시아권 국가 등 이른바 ‘마초주의’, ‘남성우위’의 유교사상의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정책을 연구하는 것 또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유럽 내에서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5대 강국으로 일컬어지는 선진국이다. 이러한 스페인을 대상으로 “왜? 아직도 스페인에서 가정폭력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은 어쩌면 “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최고의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다른 선진 문명국에 비해 가정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까?”라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의문과도 같다. 따라서 스페인의 가정폭력 대응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클 것이라고 생각하며,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스페인 유학생활동을 경험하면서 스페인 TV에서 방송하는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뉴스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 등(주로 machista에 의한 폭력이라고 하여 상당한 비난조로 반복적으로 다룸)을 중요하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가정폭력에 비교적 무감각한 마초주의 문화로부터 탈피하고자하는 스페인 사회의 노력들을 간접적으로 보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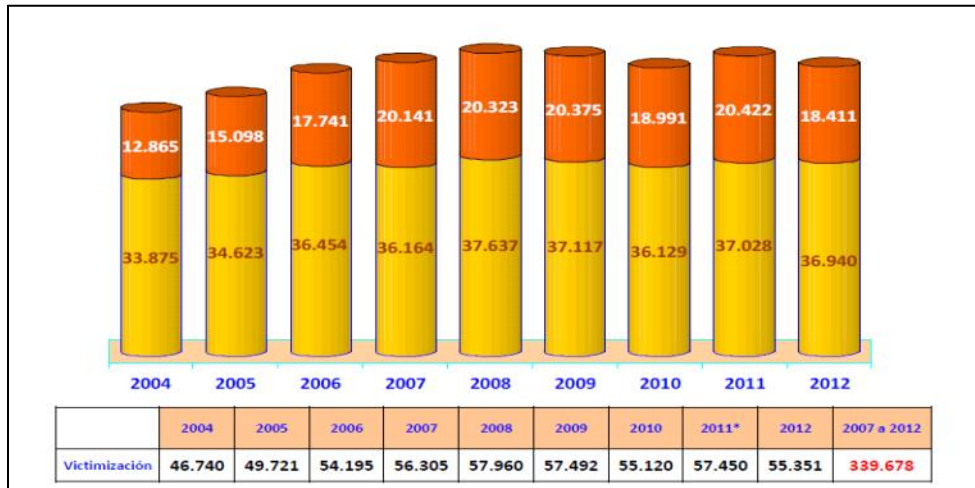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가부장적 유교문화처럼 아직까지 마초주의가 남아있는 스페인의 경찰과 정부기관들의 가정폭력 대응 정책을 다룸으로써 이상론 내지 이론적 논의를 탈피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현실에 바로 접목 가능한 정책대안을 하나라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스페인의 가정폭력 발생 실태 및 한국과의 비교

1. 스페인내 가정폭력 발생 실태 및 특징

스페인에서 한국의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성별간 폭력사건의 발생은 스페인의 “성별간 폭력방지를 위한 종합보호대책법(la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이 시행된 2004년에 46,740명의 피해 여성이 신고 되었으며, 매년 약 5만5천명 내외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1> 스페인의 연도별 성별간 폭력 피해자 현황



※ 출처 : 스페인 내무안전연구소, 노란색 : 스페인 국적자, 주황색 : 체류외국인

특이한 점은 전체 피해자의 약 30% 이상을 외국 국적여성인 차지하

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7월 기준(스페인 통계청) 스페인 전체 인구 46,766,403명 중 등록 외국인이 11%(5,147,049명)임을 감안하면 스페인내 체류외국인 피해자 비율이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페인내 체류외국인의 출신국가가 모로코(765,342명), 에콰도르(284,718명), 콜롬비아(231,661명), 볼리비아(171,255명), 중국(170,352명), 페루(115,184명) 등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후진국 출신이 많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도 최근 몇 년 동안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향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어쩌면 다문화사회의 당연하고도 당연한 문제점일 것이다.

또한 성별간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피해여성은 매년 약 50명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52명의 사망자 중 스페인 여성이 41명(78.8%), 외국인 여성이 11명(21.2%)을 차지하였다. 또한 성별간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스페인내 전체 범죄피해 사망자의 약 11~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성별간 폭력으로 인한 사망피해자 현황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성별간 폭력 사망자(비율)	72 (13.8)	57 (11.0)	69 (14.5)	71 (14.7)	76 (18.4)	56 (13.6)	73 (18.2)	61 (15.8)	52 (14.3)
전체 범죄 피해 사망자	520	518	476	482	414	412	401	385	364

※ 출처 : 스페인 통계청(www.ine.es), Mujeres y hombres en España, 2013, 전체 범죄 피해 사망자 통계는 유럽 통계청 통계임.

구체적으로 2012년 성별간 폭력으로 인한 사망여성과 가해남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배우자나 연인관계였던 경우가 38명(73.1%), 전배우자나 전 연인 혹은 이혼과정 등 결별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14

명(26.9%)로 나타났다. 즉 결혼관계나 연인관계가 청산된 이후 보다는 혼인 등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발생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접근금지나 퇴거조치 등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속히 격리 또는 분리하는 것이 적어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12년 사망자 중 사망 이전에 성별간 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성이 10명(19.2%), 보호조치를 받았던 경우가 4명(7.7%)로 나타났다. 즉 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받지 않았던 여성(38명, 73.1%)들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치닫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과 관련 기관의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알려 주는 수치로 볼 수 있다.

2.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찰청 통계의 경우 가해자 위주의 통계로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이 2012년의 경우 8,762건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검거인원은 9,345명이며, 이 중 재범자는 3,009명, 재범률은 32.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 중 8.3%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응답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정폭력 발생은 경찰청의 검거인원에 비해 적어도 몇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²⁾

1) 경찰청 내부자료

2) 여성가족부,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0, 141쪽. 여성가족부의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172쪽)에서는 부부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여성이 2.1%로 조사되어 2010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013년 한 해 동안의 살인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최소 123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³⁾ 이는 2012년의 동일한 조사에서 최소 120명인 것⁴⁾과 비교하여 여전히 가정폭력 내지 애인, 사실혼 관계 등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통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기준이 상이하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2012년 스페인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55,351명인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검거된 인원이 9,345명으로 스페인이 대략 5배 정도 공식적인 통계상의 발생건수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급한 것처럼 실제 한국의 가정폭력 신고율이 8%대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비교가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따르면 2012년에 스페인에서 가정폭력 피해로 사망한 여성이 52명인 것에 반해 한국의 경우 비록 한국 여성의전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이지만 최소 120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등에 의해 사망하였다. 스페인과 한국 사회 모두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가정폭력을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과거에 비해 아직까지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한국여성의전화, 2013년 분노의 케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보도자료, 2014. 4.

4) 한국여성의전화, 2012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20명, 보도자료, 2013. 7.

Ⅲ. 가정폭력 관련 법제 분석

스페인의 가정폭력 대응관련 법률 중 그 중심이 되는 법률은 2004년 제정된 “성별간 폭력방지를 위한 종합보호대책법(la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⁵⁾”, 이하 성별간 폭력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성별간 폭력방지법은 한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특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폭방지법)”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법 제62조에서 규정한 보호명령(la Orden de protección)의 시행절차를 규정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⁶⁾)”이 주요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호명령의 시행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1.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를 위한 종합보호대책법」 개관

5) Jefatura del Estado, «BOE» núm. 313, de 29 de diciembre de 2004, Referencia: BOE-A-2004-21760

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의 경우 스페인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는 특별법으로 보호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들은 “성별간 폭력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명령의 시행절차는 동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된다.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법은 서문(Título Preliminar)를 포함 총 6편의 7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가정폭력의 정의와 가정폭력의 당사자

먼저 스페인의 성별간 폭력방지법은 명확한 의미에서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본 보고서에서도 혼동을 피하고자 편의상 가정폭력으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스페인의 동 법률은 제목에서부터 “violencia doméstica, 가정폭력, 영어로 domestic violence”라는 표현대신 “violencia de género, 성(性)의 폭력”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Violence of Gender” 정도로 표현된다. 동 법률의 공포동기나 동법률의 개념 정의 조항에서도 왜 굳이 “Género”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동법 시행이전인 2003년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에서는 명확히 “violencia doméstica”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었다. 2004년의 성별간 폭력방지법에서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당시의 스페인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이며, 국제적 기준으로도 주로 “violencia contra la mujer, 對여성 폭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이 제기 되었다고 한다.⁷⁾ 그러나 젠더라는 표현의 사용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서 적어도 “doméstica, 가정의”라는 표현은 가정폭력을 본질적으로 사적인 문제로써 극심한 경우에만 제3자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성별간의 폭력을 가정

7) Patricia Faraldo Cabana, Razones para la introducción de la perspectiva de género en Derecho penal a través de la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sobr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Revista penal N°17, 2006, p.85.

의 문제로 변질시켜 이를 척결하는데 장애가 되는 하나의 커다란 문화적 선입견을 형성하여 왔다는 주장⁸⁾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스페인의 성별간 폭력방지법은 젠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본법의 서문에서는 성별간 폭력의 범위와 법의 제정목적, 해당 법의 전체적인 기본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표 2> 성별간 폭력방지법 서문

조 항	내 용
서문(Título Preliminar)	. 가정폭력 당사자의 범위, 가정폭력의 개념, 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원칙 등 규정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1조 1항 및 3항에서는 가정폭력 당사자의 범위와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우선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하여 법률혼의 부부이외에도 사실혼 관계 및 이와 유사한 관계로 비동거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넓게는 교제 중인 연인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가특법에서는 동법이 적용되는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대하여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여 남-여사이의 폭력뿐만 아니라, 자녀, 직계존속 등 가정구성원을 열거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표 3>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법과 한국 가특법상의 당사자 비교

8) Patricia Laurenzo Copello, LA VIOLENCIA DE GÉNERO EN LA LEY INTEGRAL : Valoración político-criminal,2005, p.7.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법	한국 가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 • 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양 법률의 차이점으로 스페인의 경우 한국의 가특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통해 부부 내지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하고자 하고 있어 그 대상자에서 한국의 가특법 제2조 2항 1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이외의 가정구성원은 적어도 해당 법의 당사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법에서 대응코자 하는 폭력의 개념으로 “차별의 표현, 불평등한 상황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힘의 관계”(제1조 1항 전단)라는 표현과 함께 “성적 자유에 대한 공격, 협박, 강요 또는 임의적 자유박탈을 포함하는 물리적, 심리적인 모든 폭력”(제1조 3항)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가특법은 제2조 3항에서 가정폭력범죄를 사자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해당 죄명의 형법조항을 일일이 열거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하여, 스페인의 성별간 폭력방지법은 우선 동법 제1조에서 동법이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남-여 사이에서 힘의 불균형”을 통해 발생하는 “물리적, 심리적 모든 폭력”으로 정의하여 가해자를 남자, 피해자를 여자로 규정하고 제4장에서 동 법이 정의한 당사자 사이의 상해, 학대, 협박, 강요 등의 스페인 형법 조항을 개정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대체토록 하고 있다. 즉 스페인의 성별간 폭력방지법은 형사절차 내지 형사실체법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페인에서 한국의 가특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된 성별 간 폭력방지법은 남자가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매 맞는 남편 등 기존의 가정폭력과는 그 양상이 반대의 경우인 사건 등이 가끔 마스크 등을 통해 전해지고는 있으나,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전통적으로 남성이며 문명사회에서 척결되어야 할 폭력으로 이러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특별히 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왜 굳이 법률명에 “가정”이 아니라 “젠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더욱 이해가 가게 된다. 물론, 매 맞는 남편 등의 문제는 스페인 일반 형법을 통해 가해자인 부인이나 여성을 처벌할 수 있다.

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환기 규정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법(제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Sensibilización, 즉 우리말로 민감화(敏感化)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 조항을 두어 가정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 광고 및 대중매체, 보건 분야에서의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여성평등에 관한 의무규정들을 명시하여 두고 있다.

<표 4>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1편

조 항	내 용
제1편 민감화, 예방 및 탐지 TÍTULO I Medidas de sensibilización, prevención y detección	
제1장 교육분야 CAPÍTULO I En el ámbito educativo	• 교육분야에서의 양성평등 및 가정폭력 예방에 관해 규정
제2장 광고와 대중매체 분야 CAPÍTULO II En el ámbito de la publicidad y de los medios de comunicación	• 광고, 대중매체에서의 양성평등 및 가정폭력 예방에 대해 규정

제3장 보건 분야 CAPÍTULO III En el ámbito sanitario	· 의료분야에서 가정폭력 탐지를 위한 노력 명시
--	----------------------------

교육분야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유아교육에서부터 평화적인 갈등해결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광고 및 대중매체분야에서는 여성에 대해 모욕적이거나 차별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관련 행정기관과 주정부, 검찰부 등이 여성비하적인 광고 등의 중지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분야에서는 가정폭력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2편(제17조 내지 제28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권리에 대하여 정보 및 법률지원을 받을 권리, 근로권과 사회복지 수급권, 피해여성이 공무원인 경우의 권리, 경제적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5>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2편

조 항	내 용
제2편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TÍTULO II Derechos de las mujeres víctimas de violencia de género	
제1장 정보, 종합적 사회지원, 무료법률지원에 관한 권리 CAPÍTULO I Derecho a la información, a la asistencia social integral y a la asistencia jurídica gratui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 조언을 받을 권리 · 장애여성의 정보접근권 · 변호인, 검사로부터 무료법률자문을 받을 권리
제2장 근로권과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CAPÍTULO II Derechos laborales y prestaciones de la Seguridad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여성의 근로시간 조정 및 직장이전의 권리 · 피해여성의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 정지 등

제3장 공무원의 권리 CAPÍTULO III Derechos de las funcionarias públic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여성공무원의 근로시간 조정 및 직장 이전의 권리 • 피해여성공무원의 결근 등의 정당화
제4장 경제적 권리 CAPÍTULO IV Derechos económic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여성이 최저임금의 75%에 미달하는 소득일 경우 6개월의 실업수당 수급권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

먼저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여성의 경우 장애를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와 검찰로 하여금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변호사협회(los Colegios de Abogados)는 가정폭력 관련 소송절차를 위하여 소속 변호사를 긴급히 지정할 수 있는 필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근로자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근로시간 조정과 다른 지방으로의 직장이전, 휴직 등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근로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6개월간의 사회보장 부담금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여성이 공무원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일반 근로여성과 유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라.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관 및 대책에 대한 규정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3편부터 제5편까지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역할, 형법(CP) 조항들의 개정을 통한 가정폭력 대응, 법원조직 및 민사·형사소송 절차상의 특칙, 보호명령의 내용이 되는 퇴거조치 등의 내용, 여성폭력에 대응한 검찰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6〉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3~5편

조 항	내 용
제3편 정부 기구의 보호 TÍTULO III Tutela Institucional	• 가정폭력전담국(Delegación del Gobierno para la Violencia de Género), 가정폭력감시기구(Observatorio Estatal de Violencia de Género), 경찰기구의 역할
제4편 형법적 보호 TÍTULO IV Tutela Penal	• 가정폭력관련 형법조항의 개정을 통한 특칙 규정
제5편 사법적 보호 TÍTULO V Tutela Judicial	
제1장 여성폭력 판사 CAPÍTULO I De los Juzgados de Violencia sobre la Mujer	• 가정폭력법원(los Juzgados de Violencia sobre la Mujer)의 구성과 역할
제2장 민사소송 절차의 원칙 CAPÍTULO II Normas procesales civiles	•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특칙
제3장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 CAPÍTULO III Normas procesales penales	•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특칙
제4장 피해자 보호와 안전을 위한 사법적 조치들 CAPÍTULO IV Medidas judiciales de protección y de seguridad de las víctimas	• 보호명령과 관련하여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규정
제5장 여성폭력 검찰 CAPÍTULO V Del Fiscal contra la Violencia sobre la Mujer	• 여성폭력 대응 검찰의 역할

제3편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정책의 중심기구로 가정폭력전담국(Delegación del Gobierno para la Violencia de Género)과 가정폭력감시기구(Observatorio Estatal de Violencia de Género)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기구의 역할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보호명령등 사법적 조치들의 집행을 위해 경찰 조직 내에 특별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 1항). 이 조항을 근거로 각급 경찰조직들은 다음장에서 다룬 가정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5편 제4장(제61조 내지 69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la orden de protección)의 내용이 되는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보호대책들을 다루고 있다.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보호명령(la orden de protección) 제도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보호명령(La orden de protección)을 들 수 있다. 보호명령은 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를 객관적인 위험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⁹⁾ 한국 가특별의 임시조치(가특별 제8조, 제29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특별 제3장)와 유사하나 보호명령의 내용이 되는 보호조치와 명령의 신청 및 결정절차 등에 다소의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서 향후 한국 가특별의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정폭력분야에서 보호명령제도는 스페인만의 독특한 제도는 아니다. 보호명령은 1963년 미국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보호명령법이 시초로, 이를 본받아 미국의 각 주정부들도 유사한 법제를 제정하였다. 보호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 격리, 접근 및 교섭 금지 등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8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보호명령제도를 확충하였다고 한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폭력방지법을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¹⁰⁾

9) Joaquín Delgado Martín,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VIOLENCIA DOMÉSTICA, Encuentros “Violencia doméstica”, 2004, p.90.

10) 성홍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3호, 2011, 187-193쪽 / 백승흠,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 경찰의 긴급조치 등 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4호, 2008, 206-222쪽.

스페인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여타의 외국이나 한국의 제도와 대동소이하나 몇 가지 법들을 서로 준용하거나 개정하여 적용하다보니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선 성별간 폭력방지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호명령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보호조치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조치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명령의 신청과 결정절차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¹¹⁾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에 이미 규정된 일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에 관한 규정을 가정폭력범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즉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법 제1조에서 형사소송법 제13조를 개정하여 수사나 소송절차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모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규정된 제544조와 더불어 제544조의3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과 관련한 규정을 두었고,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62조에서는 보호명령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544조의3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명령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가특법에서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이 되는 보호조치들과 그 결정절차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스페인에서는 보호명령의 내용과 그 절차를 각각 별도의 법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다소 복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가. 보호명령과 관련한 원칙들

11) 본 보고서의 참고자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 번역본 참조.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61조에서는 동법에 규정된 보호조치들에 관하여 민사, 형사절차에서 다른 보호수단들과 병합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제61조 1항). 즉 동법의 보호조치들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다면 병합하여 결정이 가능하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권한 있는 법관은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 진행 중 어느 때라도 직권 또는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들, 피해자와 동거하는 자, 피해자의 보호자, 검찰청 또는 피해자 보호서비스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법의 보호조치에 관해 모든 경우에 있어 그 적용과 기간을 결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61조 2항). 즉,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언제라도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명령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나. 보호명령의 내용

보호명령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해질 수 있는 보호조치로는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63조 내지 67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정보보호와 공개의 제한(성별간 폭력방지법 제63조)

가정폭력과 관련한 집행 및 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특히, 개인 정보, 자녀 및 피해자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법관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심리와 소송절차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와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2) 퇴거, 통신의 제한(성별간 폭력방지법 제64조)

-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주거로 부터의 의무적 퇴거(동거하는 주거 또는 가족구성원이 주거로 하고 있는 장소에서)와 복귀를 금지할 수 있고,
- 보호대상자가 있는 모든 장소와 주거, 직장, 보호대상자가 자주 가는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접근금지 위반을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도구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의 착용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이 밖에도,

-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 이러한 보호조치들은 분리하여 또는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퇴거나 접근금지 조치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스페인 형사소송법 제544조의2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 따르면 스페인 형법 제57조의 범죄¹²⁾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다음의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³⁾

- 특정한 장소, 구역(barrio), 지자체(municipio), 도(道, provincia), 주(州, Comunidad Autónoma)에서의 거주 금지
- 특정한 장소, 구역, 지자체, 도, 주에 대한 접근 금지
- 특정한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12) 스페인 형법 제57조의 범죄는 살인, 낙태, 상해, 자유에 대한 죄, 고문, 도덕적 완전성에 관한 죄, 성적자유와 완전성에 관한 죄, 사생활에 관한 죄, 초상권과 주거의 불가침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재산에 관한 죄, 사회경제 질서에 관한 죄 등이다.

13) Joaquín Delgado Martín,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violencia doméstica, revista xurídica galega, 2003, p.93.

- 특정한 사람에 대한 통신금지

이러한 제한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스페인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중대범죄(delitos graves)의 경우 10년 미만의 기간, 경미범죄(delitos menos graves)의 경우 5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경죄(違警罪, falta)의 경우 6월 미만의 기간으로 하고 있다.¹⁴⁾

3) 친권 제한 및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의 제한(성별간 폭력방지법 제65조 내지 66조)

법관은 가정폭력 피의자에게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보호권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 그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접촉)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4) 무기의 소유, 운반, 사용권한의 정지 조치(제67조)

법관은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하여 그 소유의 무기에 대한 영치 의무와 함께 무기의 소지, 운반과 사용의 정지 또한 결정할 수 있다.

다. 보호명령 위반 시의 벌칙

14) 스페인의 경우 법정형의 과중에 따라 중대범죄(delitos graves), 경미범죄(delitos menos graves), 위경죄(違警罪, falta)로 나누어 형사소송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CP 제13조, 제33조)

형법 제13조 (범죄의 종류)	형법 제33조 (법정형)
중대범죄(delitos graves)	2항. 5년 이상 징역, 자격상실 등
경미범죄(delitos menos graves)	3항. 3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상실 등
위경죄(違警罪, falta)	4항. 3월 이상 1년 이하 자동차 등 면허정지, 무기의 소유금지 등

법원의 보호명령에 위반하여 보호명령의 내용이 되는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40조, 형법 제468조 2항에 따라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형벌위반에 대하여는 형법 제468조 1항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과 관련한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법관에게 또 다른 보호조치의 하나로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¹⁵⁾ 이해되고 있다.

라. 보호명령 결정과정

1) 보호명령 신청

가) 보호명령 신청권자 및 접수기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피해자의 친족, 가해자의 배우자이거나 여성으로써 가해자와 배우자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명령의 신청권자가 된다.¹⁶⁾ 이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된 공사의 보호단체는 보호명령의 신청의무자가 된다.¹⁷⁾

물론, 가정폭력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경찰관은 모든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과 그 밖의 보

15) María Acale Sánchez, *Análisis del Código Penal en materia de Violencia de Género contra las Mujeres desde una Perspectiva Transversal*, REDUR 7, 2007, p.49.

16) 스페인 형사소송법(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이하 LECR) 제544조의3 제1항, 스페인 형법(Código Penal, 이하 CP) 제153조.

17) LECR 제544조의 3 2항. 공사의 보호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당직법관 또는 검찰부에 알려 보호명령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호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고지하고 절차와 내용,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보호명령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서와 함께 판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¹⁸⁾

<표 7>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신청권자 비교

스페인 피해자보호명령	한국 가특법	
	피해자보호명령	임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 그 친족 · 피해사실을 인정한 공사의 보호 단체 · 사건담당 법관 / 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 그 법정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직권) · 사법경찰관리(검사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출동경찰관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조서와 함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 법정대리인은 신청요청 및 의견 진술 가능

보호명령신청서는 국립경찰관서, 군경찰관서, 주 및 지방경찰관서, 법원, 검찰청, 공사의 피해자지원기구, 변호사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 담당 법관과 검찰 또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¹⁹⁾ 보호명령 신청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명료성** : 누구든지 간단히 작성할 수 있어야 함
2. **접근 용이성** : 다수의 기관에서 보호명령신청서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함
3. **완전성** : 한 번의 청구로 형사, 민사, 사회지원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함.²⁰⁾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003년 보호명령추진위원회(la

18) Gobierno de Canarias, Guía de Recomendaciones para la Actuación de las Policías Local en los Casos de Violencia de Género dentro del Ámbito de la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2007, p.23.

19) LECR 제544조의3 제3항.

20)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Protocolo para la implantación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violencia doméstica. 2003, p.8.

Comisión de Seguimiento de la Implantación de la Orden de Protección)는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할 보호명령신청서 서식의 표준을 작성하여 사법위원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홈페이지 및 경찰관서, 공사기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호명령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면에는 접수기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반드시 당해피해자의 것일 필요가 없으며, 법원이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면 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혹시 모를 가해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림 2> 보호명령신청서 1면

신청서 1면



MINISTERIO DEL INTERIOR GUARDIA CIVIL

FORMULARIO DE SOLICITUD ORDEN DE PROTECCIÓN

Puede rellenar e imprimir el presente formulario directamente desde su ordenador

MODELO DE SOLICITUD DE ORDEN DE PROTECCIÓN

FECHA: / /
 HORA : :

ORGANISMO RECEPTOR DE LA SOLICITUD
 Nombre del organismo: _____
 Dirección: _____
 Teléfono: _____
 Fax: _____
 Correo electrónico: _____
 Localidad: _____
 Persona que recibe la solicitud (nombre o número de carnet profesional): _____

VICTIMA

Apellidos: _____		Nombre: _____	
Fecha Nacimiento: / /	Lugar: _____	Sexo: _____	
Nacionalidad: _____		Nombre de la madre: _____	
Nombre del padre: _____		Domicilio ¹ : _____	
Teléfonos contacto ² : _____			
D.N.I. n° _____		N.I.E. n° ó Pasaporte n° _____	

¹ En caso de que la víctima manifieste su deseo de abandonar el domicilio familiar, no se deberá hacer constar el nuevo domicilio al que se traslade, debiendo indicarse el domicilio actual en el que reside. Asimismo, el domicilio no debe ser necesariamente el propio, sino que puede ser cualquier otro que garantice que la persona pueda ser citada ante la Policía o ante el Juzgado.

² El teléfono no debe ser necesariamente el propio, sino que puede ser cualquier otro que garantice que la persona pueda ser citada ante la Policía o ante el Juzga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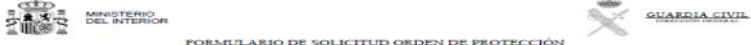
Comisión de Seguimiento de la Implantación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 Violencia Doméstica 1

- 접수기관
- 피해자 인적사항
- ※ 주거를 옮기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옮기는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주소를 기재하고,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경우도 자신의 것 이외에 경찰과 법원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음

보호명령신청서의 2면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및 유사한 피해를 당하여 신고한 경험과 그 사건처리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간단히 체크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

<그림 3> 보호명령신청서 2면

신청서 2면



MINISTERIO DEL INTERIOR GUARDIA CIVIL

FORMULARIO DE SOLICITUD ORDEN DE PROTECCIÓN

SOLICITANTE QUE NO SEA VÍCTIMA	
Apellidos:	Nombre:
Fecha Nacimiento: / / Lugar:	Sexo:
Nombre del padre:	Nombre de la madre:
Domicilio:	
Teléfono contacto:	
D.N.I. nº	N.I.E. nº ó Pasaporte nº
Relación que le une con la víctima:	

PERSONA DENUNCIADA	
Apellidos:	Nombre:
Fecha Nacimiento: / / Lugar:	Sexo:
Nombre del padre:	Nombre de la madre:
Domicilio:	
Teléfono contacto:	
D.N.I. nº	N.I.E. nº ó Pasaporte nº

RELACIÓN VÍCTIMA-PERSONA DENUNCIADA	
¿Ha denunciado con anterioridad a la misma persona? Si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En caso afirmativo, indique el número de denuncias:	
¿Sabe si dicha persona tiene algún procedimiento judicial abierto por delito o falta? Si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Qué relación de parentesco u otra tiene con el denunciado?	

Comisión de Seguimiento de la Implantación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 Violencia Doméstica 2


- 피해자가 아닌 신청자의 인적사항
- 피신고자(가해자) 인적사항
- 피해자와 피신고자(가해자)의 관계
 - 종전에 동일인을 신고한 적이 있는지?
 - 신고한 적이 있다면, 피신고자의 사법절차가 개시되었는지?
 - 피신고자와 친족 또는 어떤 다른 관계에 있는지?

보호명령신청서의 3면에는 동거 가족현황과 보호명령의 기초가 되는 폭력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경찰에 보호명령을 신청한 경우 폭력행위 등에 대한 내용은 경찰의 조서 등 수사서류


로 대체가 된다.

<그림 4> 보호명령신청서 3면

신청서 3면



MINISTERIO DEL INTERIOR



GUARDIA CIVIL

FORMULARIO DE SOLICITUD ORDEN DE PROTECCIÓN

SITUACIÓN FAMILIAR		
PERSONAS QUE CONVIVEN EN EL DOMICILIO		
Nombre y apellidos	Fecha Nacimiento	Relación de parentesco

DESCRIPCIÓN DE HECHOS DENUNCIADOS QUE FUNDAMENTAN LA ORDEN DE PROTECCIÓN*

(Relación detallada y circunstanciada de los hechos)

¿Qué último hecho le ha impulsado a formular la presente solicitud?

¿Qué actos violentos han ocurrido con anterioridad, hayan sido o no denunciados?

¿En qué localidad han ocurrido los hechos?

* En caso de que la solicitud de orden de protección se presente ante la Policía, este apartado podrá ser sustituido por la toma de declaración de la persona denunciante en el seno del atestado.


Comisión de Seguimiento de la Implantación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 Violencia Doméstica 3

- 가족 상황
 - 동거중인 가족사항
 - 보호명령의 기초가 되는 신고내용
 - 현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최종 행위는?
 - 종전에 어떠한 폭력적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신고한 적이 있는지?
 - 가해행위가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였는지?
- ※ 경찰에 제출된 경우 해당 질문은 경찰관의 조서로 대체됨


4면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험, 법률 조력을 원하는 지, 자녀들과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지, 다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 평균 수입은 얼마인지 등 모든 지원서비스가 보호명령신청서의 작성하나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묻는다. 물론, 대부분의 질문은 “예” - “아니오”의 선택형 답변으로 작성된다.

<그림 5> 보호명령신청서 4면

신청서 4면



MINISTERIO
DEL INTERIOR



GUARDIA CIVIL
DIRECCION GENERAL

FORMULARIO DE SOLICITUD ORDEN DE PROTECCIÓN

ATENCIÓN MÉDICA

Caso de haber sido lesionada, ¿ha sido asistida en algún Centro Médico? Si No

¿Aporta la víctima parte facultativo? Si No

En caso afirmativo, únase una copia del parte como anejo de esta solicitud

ASISTENCIA JURÍDICA

¿Tiene usted un Abogado que le asista? Si No

En caso negativo, ¿Desea contactar con el servicio de asistencia jurídica del Colegio de abogados para recibir asesoramiento jurídico? Si No

OTROS DATOS DE INTERÉS PARA LA ADOPCIÓN DE MEDIDAS DE PROTECCIÓN

- En caso de convivencia en el mismo domicilio de la persona denunciada ¿quiere continuar en el mencionado domicilio con sus hijos, si los hubiere? Si No
- ¿Quiere que la persona denunciada lo abandone para garantizar su seguridad? Si No
- ¿Necesita obtener algún tipo de ayuda económica o social? Si No
- ¿Trabaja la víctima? Si No
- En caso afirmativo, indique la cantidad mensual aproximada si la conoce:
- ¿Trabaja la persona denunciada? Si No
- En caso afirmativo, indique la cantidad mensual aproximada si la conoce:
- ¿Existen otros ingresos económicos en la familia? Si No
- En caso afirmativo, indique la cantidad mensual aproximada si la conoce: _____

Comisión de Seguimiento de la Implantación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 Violencia Doméstica



4

- 진료 상황
 - 부상의 경우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였으면 첨부
- 법률 지원 상황
 - 조력 받을 변호인이 있는지?
 - 없다면, 변호사협회의 법률자문을 원하는지?
-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피신고자와 동거 중이라면 같은 장소에서 자녀들과 계속 지내기를 원하는지?
 - 안전을 위해 피신고자가 주거에서 퇴거하기를 바라는지?
 - 경제적, 사회복지적 지원을 원하는지?
 - 피해자가 현재 일을 하는지? 일을 한다면 매월 평균 수입은?
 - 피신고자가 일을 하는지? 일을 한다면 매월 평균 수입은?
 - 가계에 다른 경제적 수입원이 있는지? 있다면 매월 평균 액수는?

마지막 5면에는 보호명령신청서의 접수법원 및 작성 시의 주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6> 보호명령신청서 5면

신청서 5면

 MINISTERIO DEL INTERIOR  GUARDIA CIVIL

FORMULARIO DE SOLICITUD ORDEN DE PROTECCIÓN

JUZGADO AL QUE SE REMITE LA SOLICITUD:

A RELLENAR POR EL ORGANISMO EN EL QUE SE PRESENTA LA SOLICITUD

(Firma solicitante)

INSTRUCCIONES BASICAS

1. No resulta imprescindible contestar todas las preguntas, aunque si que es importante hacerlo
2. Una vez cumplimentada esta solicitud, debe entregarse una copia a la persona solicitante, y el original debe ser remitido al Juzgado de guardia de la localidad, quedando otra copia en el organismo que recibe la solicitud
3. Si la victima aporta parte médico, denuncias anteriores u otros documentos de interés, serán unidos como anejos de la solicitud

Comisión de Seguimiento de la Implantación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 Violencia Doméstica 5

- 접수할 법원
- 주의 사항
 - 중요할 지라도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음
 - 부분 1부는 신청자 교부, 원본은 법원에 송부, 부분 1부는 접수기관에서 보관
 - 피해자가 진료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종전에 신고를 하였거나, 다른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에 첨부

아래 한국의 임시조치 신청서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를 보면 임시조치 신청서의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하고 통상 수사서류와 함께 검사에게 신청하므로 스페인 보호명령신청서에 기재될 사항이 환경조사서 내지 경찰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시조치 신청서 자체는 신청하는 임시조치의 내용과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및 입

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간략히 적도록 되어있다.

<그림 7> 한국의 임시조치 신청서

임시조치 신청서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2호 서식] - 「임시조치 신청서」 :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 신청 시 작성	
○○○○ 경찰서	
계 0000-00000호 수 신 : 지방경찰청 검사장(지청장) 계 목 : 임시조치 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퇴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2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해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번호 인	
피해자	성 명
	주 거
	직 장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 경찰서 사범경찰관(리) ○○ (인)	

- 한국의 임시조치 신청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범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기 때문에,
- 형사사건을 전제로 하여 작성됨으로 임시조치 신청서 자체는 청구하는 임시조치의 내용과 가.피해자 인적사항으로 단순 구성되어 있으며,
-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가정환경 조사서 및 경찰 수사서류에 나타나게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으로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자세한 폭력행위 발생 등 보호명령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별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있어 가정보호사

건의 규정을 준용(가특법 제55조의7)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강제소환이 가능(가특법 제24조)하므로 법관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법정에서 심리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적어도 스페인의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와 비교하여 신청서의 작성단계에서 피해자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손쉽게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의 개괄적 사항을 서술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림 8> 한국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청구(민사상 절차)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피해자	성명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주소 :
법정대리인 (보조인)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피해자와의 관계 :
행위자	성명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등록기준지 : 주소 :
청 구 취 지(해당란에 √표시)	
구분	구체적 내용(주거·방식·리장·전기통신 등 특정)
<input type="checkbox"/>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input type="checkbox"/>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input type="checkbox"/> 전기통신사업법 제20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input type="checkbox"/> 친권행사의 제한	사전본인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input type="checkbox"/>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의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 등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 기본적으로 임시조치신청서와 기재사항은 동일하다. - 그러나, 자세한 청구사유는 별지를 활용하여 작성이 가능하다. 	

나) 당직 판사(Juzgado de guardia²¹⁾)의 조치

당직 판사가 보호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긴급심문(audiencia urgente)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심문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보호명령 신청자, 가해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심문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문과정에서 법관은 가해자와 피해자, 자녀, 기타 가족들과의 대면을 피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를 위해 분리심문을 할 수 있다. 해당 심문과정에서 당직 판사는 보호명령 결정 여부, 보호명령의 내용 및 포함될 보호대책들에 관해 결정하여야 한다.²²⁾

2) 보호명령 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관계

모든 보호명령 신청은 발생한 가정폭력 범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형사소송절차와 결부되어 있으며, 보호명령 절차와 형사소송절차와의 관계는 소송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²³⁾

1. 보호명령과 관련된 행위들에 대한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법관은 범죄 또는 경미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사절차를 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보호명령과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형사소송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법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거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²⁴⁾

21) Juzgado de guardia는 즉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법관을 뜻하므로 한국의 영장전담판사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22) LECR 제544조의 2 4항.

23)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ob. cit. p.12.

24) LECR 제544조의 3 11항.

3.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예심판사(el Juzgado de Instrucción)은 당번 법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긴급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관할에 관계 없이 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3) 보호명령의 행정기관간 통지와 집행

당직 판사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성별간 폭력방지법에 규정된 보호조치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각 조치들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명령을 결정하는 예심판사와 사법경찰은 전화 등 전기통신적 방법으로 결정사항들을 통지할 수 있다.²⁵⁾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녀들이나 장애아가 있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찰부에서는 민사적 성질의 보호조치 또한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적 조치들은 주거의 공유문제, 자녀들에 대한 접견교섭,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민사적 조치들은 임시적인 수단들로서 30일의 유효기간을 가지며,²⁶⁾ 추후 민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보호명령의 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등에도 통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544조의3 8항에서는 지자체 등 피해자 지원행정기관에 법원과의 조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정부에서는 법관이 보호명령 결정을 통지할 조정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un Punto de Coordinación), 전기통신적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당직 판사의 보호명령이 통지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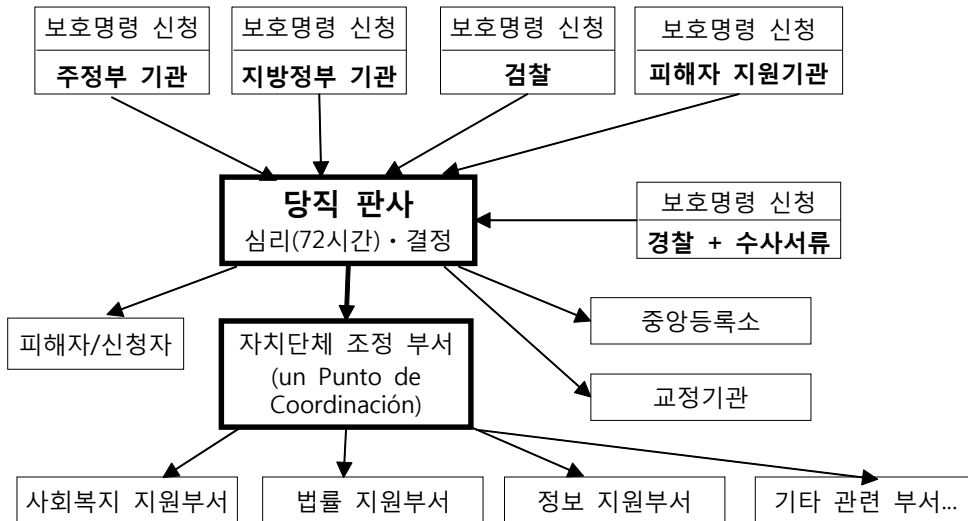
25)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ob. cit. p.13.

26) LECR 제544조의 3 7항.

27)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ob. cit. p.16.

이 밖에도 스페인 법무부(el Ministerio de Justicia)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Oficinas de asistencia a las víctimas)에 보호명령 결정이 통지되도록 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내용으로는 형사절차 진행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보상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에 규정된 지원서비스의 청구 가능성에 대한 정보,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금 등에 관한 형사절차상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있다.²⁹⁾

<그림 9> 피해자보호명령의 처리 절차



또한 보호명령이 결정되면 스페인 법무부 산하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앙등록소(el Registro Central para la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벌과 보호명령의 종류, 형벌이나 보호명령 위반 시 그 내용 등이 등록되게 된다.³⁰⁾ 이러한 정보는 검찰, 사법경찰, 군경찰,

28) www.mjusticia.gob.es

29) Ministerio de sanidad, servicios sociales e igualdad, Guía de los derechos de las mujeres víctimas de violencia de género, p.31.

30) LECR 제544조의 3 10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담당 지자체 공무원, 교정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³¹⁾

마. 한국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과의 비교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법상의 보호명령은 동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형사, 민사소송절차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보호수단과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임시적인 보호수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중국적인 형벌이나 한국의 가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을 대체하는 보호처분과는 그 성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스페인의 보호명령은 2011년 7월 가특법 개정으로 신설된 한국의 피해자보호명령과 그 성질이 유사하고 할 수 있다.

1) 내용상의 차이점

아래 표에서 보듯 한국 가특법상의 피해자보호명령과 스페인의 보호명령은 그 내용에 있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가 모두 영미국가의 보호명령(Protection Order)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보호명령과의 내용상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스페인의 경우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자발찌 등 전자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보호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가특법 제63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사후적인 가해자 처벌을 통해서 피해

31) http://www.mjusticia.gob.es/cs/Satellite/es/1215197983369/Estructura_P/1288781229623/Detalle.html

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후적인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 담보방안의 경우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임시조치에 대한 비판이³²⁾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표 8> 스페인의 보호명령과 한국의 피해자보호명령과의 비교

스페인의 피해자보호명령	한국의 피해자보호명령 (가특법 제55조의2)
- 한국과 동일	1호 : 주거,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한국의 경우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접근금지이나 스페인의 경우 접근금지 거리를 법관이 결정하도록 하며, 접근금지 장소 또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모든 장소와 자주 가는 장소 등으로 보호범위가 보다 넓음	2호 : 주거·직장 100m 접근금지
- 스페인의 경우 전자발찌 등을 사용하여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 한국과 동일	3호 : 전기통신 이용접근금지
- 한국과 동일	4호 : 가해자의 친권행사 제한

2) 결정과정상의 차이점

우선 보호명령의 신청권과 관련하여 <표 7>에서 보듯 한국의 경우 그 신청권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친족뿐만 아니라 폭력을 인지한 공사의 기관 또한 보호명령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사실상 보호명령의 신청권자라 볼 수 있으며, 경찰 또한 피해자가 보호명령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서류와 함께 법원에 송부하도

32) 백승흠, 앞의 논문, 227쪽.

록 하여 신청권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소송절차 진행 중에 검찰과 법관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임시조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권자가 좁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임시조치의 경우 검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가특법 제8조)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권의 보장조항이 지난 2007년 가특법 개정으로 신설됨으로써 과거보다 진전된 것임은 틀림없으나, 결국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거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보호에 대단히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밖에도 스페인의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심리의 개시를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서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의 심리·결정에 대한 기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임시조치의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고 오히려 보호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형벌로 규정되어 있어 그 효과에 있어 보호명령의 규범력이 높음에 사건 초기에 더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기간의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IV. 스페인의 가정폭력 방지대책

1. 종합적인 對여성 폭력 척결 전략계획의 수립·시행

스페인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국가적인 對가정폭력 대응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물론 초기의 가정폭력 대응 정책은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나³³⁾, 점차 가정폭력을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로 설정하여 종합적인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는 가장최근인 2013년 5월에 보건·사회서비스와 양성평등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對여성폭력 척결 전략 2013-2016』(Estrategia para la erradicación de la violencia contra las mujeres 2013-2016)을 중심으로 간략히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전략계획은 일반적 개념으로 對여성 폭력을 대상으로 하나, 그 중에서 특히 스페인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1조에서 정의하는 성별간의 폭력을 그 대상으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³⁴⁾ 이러한 가정폭력 척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네 개의 목적, 세 개의 실행축 및 각 부처가 추진하여야 할 세부대책 28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33) 이전에는 각 부처별로 해당 분야의 가정폭력 대응 정책을 실시하였다면, 1997년에 장관위원회에서 가결된 제3차 양성평등 정책(el III Plan para la Igualdad de Oportunidades de las Mujeres 1997-2000)에서 오로지 여성폭력과 관련한 분야를 신설하여 전부처의 대책을 조정하고 역량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4) Ministerio de Sanidad, Servicios Sociales e Igualdad, Estrategia para la erradicación de la violencia contra las mujeres 2013-2016, 2013, pp. 13-15.

가. 對여성폭력 척결 전략의 목적³⁵⁾

우선 네 개의 전략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학대에 대한 연대적 침묵의 절연”으로 가정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하고 가정구성원, 직장동료, 공사의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들로 하여금 가정폭력 초기에 그 징후를 인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제도적 대응의 개선과 개별화된 지원 및 ‘하나의 창(ventanilla única)’을 향한 전진”은 우선 각각의 피해여성의 상황에 맞는 보호대책의 마련을 통해 재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자신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헤매는 일을 방지하는 것과 사법행정기관과 경찰기구의 대응을 보다 완벽하게 하고 보호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로서의 하나의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미성년자와 특별히 가정폭력에 취약한 여성에 대한 지원”이 세 번째 목적이다. 이는 가정폭력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제2, 제3의 재피해를 방지하고 가. 장애가 있는 여성, 나. 농촌지역 여성, 다. 65세 이상의 장년여성, 라. 이민여성, 마. 마약, 약물 등에 중독장애가 있는 여성을 특별히 가정폭력에 취약한 여성으로 예시하여 특별한 주의와 지원이 필요함을 적시하고 있다.

4.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다른 유형의 폭력의 가시화와 관심”을 제시하고 있다. 강요된 결혼, 여성과 아동의 성착취, 성폭력 등 가정폭력 이외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주의를 촉구함을 ‘對여성폭력 척결 전략’의 마지막 목적으로 하고 있다.

35) Ministerio de Sanidad, Servicios Sociales e Igualdad, ob. cit, pp. 100-108.

나. 對여성폭력 척결 전략의 세 가지 실행축³⁶⁾

앞서 언급한 네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축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 공무원, 경찰 등 “전략실행자들의 육성과 가시화”가 전략의 목적달성을 위한 실행축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정폭력 척결은 물리적 자원의 구비만큼이나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관 등의 능력이 주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 “기관간의 조정,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을 통한 집행의 극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적(중앙정부-주정부-지방정부), 사적 기구들 간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많은 기구들에 의해 실행되는 가정폭력 대응 정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3. “정책품질, 평가, 정보와 지속적인 개선”을 전략실행을 위한 하나의 기둥으로 제시하고 있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가지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지원정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정책을 알리고, 그 정책을 평가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부처별 세부 대책

가정폭력 척결 정책은 마지막으로 각 부처별로 실행할 세부대책 284개와 필요 예산을 네 가지 전략목적과 세 가지 실행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³⁷⁾ 본 보고서에는 경찰과 관련된 몇 가지 세부 대책을 예시로

36) Ministerio de Sanidad, Servicios Sociales e Igualdad, ob. cit, pp. 109-111.

37) Ministerio de Sanidad, Servicios Sociales e Igualdad, ob. cit, pp. 113-149.

적고자 한다.

<표 9> 對여성폭력 척결 전략 중 세부 대책(경찰관련 예시)

안전과 사법 분야		
	대 책	담당 책임 기관
55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들에 관한 경찰의 위험성 평가 메커니즘의 구축	내무부-안전차관
56	사법기관 종사자 및 경찰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한 전기통신 기기”의 활용에 대한 지식의 제고	내무부-안전차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57	법무부의 전산망과 경찰의 가정폭력시스템의 연결 촉진	내무부-안전차관 법무부

2. 가정폭력 관련 경찰전담기구 운영³⁸⁾

스페인의 경찰체계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조직인 국립경찰(el Cuerpo Nacional de Policía)과 군경찰(Guardia Civil), 자치경찰조직인 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는 국가경찰에 편제되어있는 가정폭력 전담경찰기구에 대해 간략히 그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립경찰은 사법국(Policía Judicial) 소속하에 SAF와 안전국(Seguridad Ciudadana) 소속하에 UPAP를 두고 있다. 수사와 예방이라는 양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지 않고, 그 성질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군경찰의 경우 수사기능과 예방기능을 통합하여 EMUME라는 하나의 전문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

38) Jorge Zurita Bayina, la lucha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Seguridad y Ciudadanía: Revista del Ministerio del Interior, N. 9, enero-junio, 2013, pp.29-32./ www.policia.es/ www.guardiacivil.es

으나 그 소속은 사법국 산하로 하고 있다.

가. SAF(Servicios de Atención a la Familia)

국립경찰은 이미 1986년에 스페인 최초의 가정폭력 전담경찰기구인 SAM(Servicio de Atención a la Mujer)과 GRUME(Grupo de Menores)을 창설하여 운영하여오던 중 양 조직을 SAF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SAF의 주요 역할로는

- 가정폭력, 성적자유에 대한 범죄의 신고접수
- 전술한 범죄에 대한 수사
- 피해여성에 대한 전문적이며 개별화된 지원
- 대여성범죄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이 있다.

2013년 3월 기준 882명의 전담경찰관이 SAF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사법국산하에 ‘SAF Central’을 창설하여 각각의 지방에서 활동 중인 SAF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UPAP

2003년에 창설된 UPAP(Unidades de Prevención, Asistencia y Protección contra los malos tratos a la mujer) 역시 국립경찰 소속이나 SAF가 사법국 산하에서 수사기능을 주로 수행한다면 UPAP는 한국경찰의 생활안전국 소속의 예방기능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UPAP는 현재 지방청, 지역 경찰서 등 모든 경찰기구에 설치되어 가정

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한 예방, 보조,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UPAP의 보호대상이 되는 다음의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 성별간 폭력방지법 제1조에서 규정한 가정폭력의 피해자
- 피해를 신고한 경우
- 판사에 의해 보호명령이 내려지거나,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또한 UPAP 담당 경찰관에게는 각 경찰관마다 지정된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공공휴대폰이 지급된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세 가지의 통신단계에 따라 버튼이 구성된 전용단말기가 지급된다.

세 가지 통신단계는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단계 : 보호담당경찰관과 연결
- 두 번째 단계 : 091센터(한국의 112신고센터)로 연결되어 경찰의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 보호경찰관과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활용하는 단계이다
- 세 번째 단계 : 국립경찰의 생활안전국(Comisaría General de Seguridad Ciudadana) 산하의 조정실(la Sala de Coordinación Operativa)과 연결되어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UPAP의 기능은

- 피해여성과의 개별적이며 전기통신적 연락체계 구축
- 피해여성의 위험상황의 감지 및 통제, 피해자 위험성 변화의 측정

(VDG시스템)

-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연계
- 필요한 경우 경찰단계 및 사법절차상 피해자에 대한 조언, 보조 및 동행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일상적 생활의 관리 등이다.

2013년 3월 기준 641명의 전담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다. EMUME

EMUME(Los Equipos Mujer-Menor)는 군경찰 사법경찰국 소속으로 피해여성 및 미성년자에 대한 종합적이며 개별적인 지원과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사보호단체에 피해자 연계를 주된 목적으로 1995년에 창설되었다. 국립경찰의 가정폭력 전담기구와 달리 EMUME는 對여성 범죄 및 청소년 범죄를 포괄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EMUME의 업무 범위는

-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 가정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유에 대한 범죄
- 청소년관련 범죄
-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인터넷을 통한 아동포르노 등이다.

EMUME의 구체적 임무로는

- 소속 하위 경찰기구 및 경찰관에 대한 전기통신적 방법에 의한 조언
- 주요사건 발생 시 범죄수사 및 피해자 보호

- 관련 단체, 기구 등과의 연계 유지
- EMUME Central에 대한 관련 보고

사법경찰국에 소속된 EMUME Central(중앙기구)의 임무로는

- 여성과 미성년자에 대한 문제 분석 및 관련 범죄백서의 작성
- 주요 사건에 대한 지방 EMUME 지원
- 관련 전문가의 양성 등이다.

2013년 3월 기준 618명의 전담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스템 운영 (Sistema VdG o VIOGÉN)

VDG 시스템은 내무부 치안차관실 주도로 개발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으로 피해여성과 관련된 위험 상황에 관한 정보를 통해 장래의 피해재발을 방지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VDG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 국내의 어느 장소에서도 경찰에 의한 피해자 보호의 보장
- 경찰, 판사, 검찰, 교정기관, 지원 서비스 기관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보호·지원기관을 하나의 시스템 아래에 통합하여 활동의 동일지향
- 피해자를 둘러싼 행위들과 환경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여 이러한 정보들을 모든 관련 기관들이 사용·공유할 수 있는 기

반 마련

- ‘위험성 평가’(valoración de riesgo)를 통해 피해자가 새로운 피해를 받을 수준(최고위험-높은위험-중간위험-낮은위험)을 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의 실행

즉 VDG의 주요 기능은 가정폭력 관련 기관간의 피해자 정보공유, 위험성 예측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의 재발방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요기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정폭력 관련 기관간의 정보 공유

해당 시스템의 주요한 기능은 우선 관련 기관간의 정보의 연계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경찰보유 정보, 무기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정보, 전과기록, 교정정보, 법무부관리 정보 등 모든 관련 정보를 기관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림 10> VDG시스템의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체계도



※ 출처 : 스페인 내무안전연구소

VDG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접속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³⁹⁾으로는

- 형사관련 사법기관과 여성폭력관련 판사
- 검찰부
- 사법경찰관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 교정행정기관
- 정부산하 기관
- 법무부 및 주정부의 법의학기관
- 주정부의 보호명령 관련 기관 및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있다.

2013년 4월 기준 VDG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는 37,119명에 달하고 있다.

<표 10> 기관별 VDG시스템 사용자 현황 (2013. 4월 기준)

기 관	합계	군경찰	국립경찰	교정국	검찰	법원	평등부	자치경찰
등록 사용자	37,119	16,653	12,993	1,296	2,181	2,034	94	1,868

※ 출처 : 스페인 내무안전연구소

나.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위험성 평가

VDG시스템의 중추적인 기능으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들 수 있다.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경찰 활동 중 파악하게 된 a)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관련된 요인들 b) 가해자와의 관계 c)

39) Orden INT/1202/2011, de 4 de mayo, por la que se regula los ficheros de datos de carácter personal del Ministerio del Interior. Boleín Oficial del Estado Núm. 114. pp. 48789-48792.

가해자의 전과와 환경 d)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 사회, 경제, 직업적 환경 e) 신고의 철회, 가해자와의 동거의 재개, 피해자의 보호조치 철회 등의 정보를 인트라넷으로 연결된 VDG시스템의 규정된 서식에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위험상황과 그 변화를 평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다.⁴⁰⁾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위험성 평가는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이 최초로 가정폭력 사건의 위험상황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험성 진단(VPR, Valoración Policial del Riesgo)’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담당하게 되는 경찰관이 주기적으로 위험상황의 변화를 진단하는 ‘위험성 변화 평가(VPER, Valoración Policial de la Evolución del Riesgo)’로 이루어진다.

1) 위험성 진단 (VPR, Valoración Policial del Riesgo)

최초의 위험성 진단은 VDG시스템의 규정된 서식에 나타난 질문들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통해 체크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시스템 입력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조사가 다른 사실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인해 지연되게 된다면 우선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추후에 보강된 다른 정보들과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등을 바탕으로 재입력을 하면 된다.

이러한 입력정보들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조사내용, 목격자 등의 진술, 과학적 정보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⁴¹⁾

40) INSTRUCCIÓN N° 5/2008, DE LA SECRETARÍA DE ESTADO DE SEGURIDAD, POR LA QUE SE MODIFICA LA INSTRUCCIÓN 10/2007, DE 10 DE JULIO.

41) Francisco Javier Virseda Serna, Prevención y Gestión del Riesgo. Análisis de Buenas Prácticas, III Congreso para el estudio de la violencia contra las mujeres, 2012, p. 5.

<그림 11> VPR입력 화면

※ 출처 : 스페인 내무안전연구소

<표 11> VPR 입력시 질문표

출 처	평가 지표	강도
피해자☑	• 물리적 폭력 여부(상해여부)	- 알 지 못함 - 전혀 없음
	• 성적 폭력 여부	
	• 피해자에 대한 무기 또는 물체 사용 여부	
	•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손해를 야기하는 협박 또는 기도	
	• 폭력적 협박 또는 사건의 증가 또는 반복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심리적 폭력	
	• 주거, 동산 또는 다른 물건에 대한 손괴	
	• 임시조치, 보호조치 불이행	
	• 안전에 관한 형사적 수단 또는 형벌의 위반	
	• 공권력 또는 공무원에 대한 가해자의 도전적·경멸적 행동 또는 이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행동	
가해자□	• 가해자의 전과와 경찰기록(특히 폭력과 관련한)	- 높음
	• 가해자의 중독성 물질, 알코올, 약물 남용	- 매우 높음
	•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과장된 애정 또는 집착을 보이는지 여부	
	• 부부관계에서의 명백한 문제점 여부	
	• 가해자의 재정적 또는 직업적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기술적 방법□	• 가해자의 자살 성향	

이러한 입력정보를 바탕으로 VDG시스템은 자동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위험수준에 따라 ‘무측정(no apreciado) - 낮음(bajo) - 중간(medio) - 높음(alto) - 매우 높음(extremo)’의 5단계로 평가하게 된다. 각각의 평가단계에 따라서 경찰의 보호조치 내용이 결정되게 된다. 또한 중간이상의 위험단계의 경우 피해자에게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표 12>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경찰의 보호조치

위험성 단계	보호 조치 내용
최고 위험	의무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의 주변정황을 감안, 당면한 위협이 소멸할 때까지 피해자 관찰 · 당면한 위협이 소멸할 때까지 가해자의 이동에 대한 강력한 관리 · 필요한 경우 자녀들의 등하교 관찰
높은 위험	의무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또는 자녀의 등하교시 빈번한 관찰 · 사건 초기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입소나 친척주거로 이동을 권고. 특히, 가해자가 체포상태가 아닌 경우 · 가해자의 이동 등을 부정기적으로 관리
	부가적 조치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 직장, 친척 등 가해자와 피해자 주변사람과의 부정기적인 접촉 · 가해자 감시를 위한 전자기기(전자발찌 등) 사용을 적극 고려
	의무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또는 자녀의 등하교시 비정기적 관찰 · 피해자의 형사, 행정 절차시 위험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동행 · 통신기기를 통한 보호조치 적극 권고 · 경찰책임자의 피해자 개인 면담
	부가적 조치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의 보호조치 준수의 주기적 확인 · 피해자 지원기구(지자체 등) 담당자 면담 ·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
	의무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최접 경찰관서의 전화번호 등 고지 • 피해자와 비정기적 전기통신적 연락 •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관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고지 • 피해자에 대해 자기방어 및 추후 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의 권고 • 통신기기를 통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
	<p>부가적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개인적, 비정기적 접촉 • 순찰경찰관이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주요정보 서류철 소지 • 피신고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거지에서 가재도구 등을 반출할 경우 동행
무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고지, 경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의 지원 등 다른 일반사건의 신고자와 동일

2) 위험성 변화 평가 (VPER, Valoración Policial de la Evolución del Riesgo)

위험성 진단이 실시되고 나면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이 주기적으로 피해자 내지 주변인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VPER 서식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며 이는 위험성 변화 평가가 된다.

VPR평가와 마찬가지로 VPER평가도 규정된 서식에 획득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표 13> VPER평가지 질문표

출 처	평가 지표	강도
피해자☑	•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할 가능성여부 (감옥 또는 치료기관 수감여부, 국외출국, 물리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	- 알지못함
가해자□	•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는지, 원거리로 사는 곳을 옮겼는지, 임시조치 등을 따르고 있는지)	- 아님
목격자□		- 가끔
기술적 방법□	• 신고시점부터 가해자가 평온한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	- 자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상태를 추정하여, 피해자나 주위에 대한 보복 감정이 없는지 여부)	
	· 가해자가 재산분리와 친족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가해자가 관계 공무원과 협조적이며 법률 준수 태도를 나타내는지 여부	
	· 가해자가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인지 여부	
	· 가해자가 후회하거나 지원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 여부	
	· 피해자가 본인의 안전을 위한 사회지원프로그램을 받고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발견될 가능성이 적은 장소로 옮겨졌는지 여부	
	· 가장 최근의 평가이후 사고 없이 시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네
	· 가해자가 도주 중이거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지 여부	
	·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과장된 애정 또는 집착을 보이는지 여부	
	· 가해자가 자살 성향, 심리적·정신의학적인 문제 또는 중독증상을 보이는지 여부	
	· 피해자가 법적 조치들이 중단될 것을 바라거나 신고취소 또는 보호수단의 중지를 원하는지 여부	
	· 가해자가 이혼이나 별거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상태인지 여부	
	· 피해자가 심리적·정신의학적인 또는 중독증상을 보이는지 여부	
	·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주위에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실제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VPER평가는 위험등급에 따라 규정된 주기에 피해자나 주변인 면담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피해자의 위험상황의 변화를 파악하게 된다. 또한 해당 입력 주기 내에서라도 법무부, 검찰부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태도나 주변상황의 중요한 변화를 인지하였을 경우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여 평가하게 된다.

<표 14> 위험진단·평가결과에 따른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 면담·보호 주기

위험성 단계별 피해자 보호 주기	위험 등급	입력 주기
	최고 위험	72시간 단위 피해자 면담 및 시스템 입력
	높은 위험	7일 단위 피해자 면담 및 시스템 입력
	중간 위험	30일 단위 피해자 면담 및 시스템 입력
	낮은 위험	60일 단위 피해자 면담 및 시스템 입력

이러한 주기적인 피해자 위험상황 평가를 통해 피해자의 향후 가정폭력 재피해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평가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재피해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피해자를 관리·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위험등급은 조서 등 수사·소송서류에 기재가 되며, 위험등급이 중간~최고위험 단계인 경우 주요한 위험요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사법기관에서 결정한 보호조치 내용과 경찰의 위험성 평가결과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우선 사법기관의 조치를 따르되, 신속하게 이러한 불일치를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누적등록피해자수는 270,360명이며, 2013년 4월 기준 최고위험 등급 5명, 높은 위험 등급 123명, 중간 위험 등급 2,782명, 낮은 위험 등급 12,590명의 피해자가 경찰의 지속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4. 가정폭력 신고 전화(016) 및 휴대단말기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 지원 서비스(ATENPRO) 운영

가. 가정폭력 전용 피해신고 전화(016) 운영

2007년부터 스페인 평등부 소속 가정폭력전담국(Delegación del Gobierno para la Violencia de Género)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적합한 정보제공과 조언을 목적으로 016번의 전화번호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번호로 사용하고 있다. 016번은 전국 공통번호로 24시간 무료사용이 가능하며, 전화청구서 등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번호 접속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번호를 통해

-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주변인에게 학대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 취업, 사회복지서비스, 경제적 지원방안, 보호시설 등의 정보 제공
- 법률자문
- 응급전화의 경찰 연계
- 주정부 산하의 유사기구간 조정
- 6개 언어로 피해자 지원 : 가스테야노(스페인어), 까딸란(스페인 방언), 가예고(스페인 방언), 바스꼬(스페인 방언), 영어, 프랑스어
- 청각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전화서비스로 연계 등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서비스 시작 때부터 2012년까지 016번을 통해 1,580,61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실제 가정폭력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신고건수는 353,392건으로 보고되었다.⁴²⁾

나. 휴대단말기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 지원 서비스 (ATENPRO)

016번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평등부 소속 가정폭력전담국(Delegación del Gobierno para la Violencia de Género)에서는 2010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통신서비스(Servicio telefónico de atención y protección para la víctimas de la violencia de género, Servicio telefónico ATENPRO)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이동통신의 위치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용단말기나 개인 휴대폰에 ATENPRO로 접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돌발 상황에서 가정폭력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1990년 초부터 영국 등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대피 쉼터에 경찰비상호출장치(Panic Button)를 설치하여 가해남편 등의 침입우려가 있을 때 경찰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에⁴²⁾ 최근의 휴대정보통신기능을 부가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ATENPRO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학대가해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
- 사법기관에서 보호명령 또는 접근금지조치 결정시 해당 서비스의 역효과가 없다고 고려한 경우
-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등의 세가지 요건이 있다.

42) Ministerio de Sanidad, Servicio Social e Igualdad, Informe 2007-2012, Servicio 016 de información y asesoramiento jurídico en materia de violencia de género.

43) 표창원, 영국사례의 검토를 통한 한국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방안,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2000, 145쪽.

현재 ATENPRO서비스는 스페인 적십자사⁴⁴⁾를 통해 청각·시각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3월말 기준 9,617명이 가입되어 있다.⁴⁵⁾

<그림 12> ATENPRO서비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화면 (청각장애인용)	내 용
	<p>청각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 구동화면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원하십니까?”라는 문구 표출 - 문자로 요청사항을 전송할 수 있음

※ 출처 : 스페인 평등부

5.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2008년 스페인 내각위원회(el Consejo de Ministros)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전자적 도구를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평등부, 법무부, 내무부에 지시하였다. 이러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의 착용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⁶⁾ 스페인에서는 2009년 7월 법무부, 내무부, 평등부, 사법위원회, 검찰부 등 관계 부처가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협약⁴⁷⁾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평등부의 관

44) 스페인에서 적십자사(Cruz Roja)는 한국의 소방기능 중 응급의료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45) <http://www.msssi.gob.es/ssi/violenciaGenero/Recursos/ATENPRO/home.htm>


46) 경찰청, 각국의 가정폭력 실태 및 대책, 경찰청 외사국, 2006. 9, 15쪽.

47) <http://www.poderjudicial.es/stfls/PODERJUDICIAL/DOCTRINA/FICHERO/Acuerdo%20>

할로 하였다. 기본적인 운용방식은 GPS를 활용하여 현재 한국에서 성범죄자 등 특정범죄자들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같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별도의 단말기를 지급하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2TRACK)는 GPS를 장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통제센터에서 파악할 뿐만 아니라, 단문메세지(SMS) 송·수신기능과 양방향 음성통신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통제센터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접근경고를 음성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RF모듈을 장착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가해자의 접근을 피해자용 단말기에서 감지하여 피해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림 13> 전자발찌 및 피해자용 단말기

전자발찌	피해자용 단말기(2TRACK)
	

※ 출처 : Protocolo de actuación para la implantación del sistema de seguimiento por medios telemáticos del cumplimiento de las medidas de alejamiento en materia de violencia de género, 스페인 법무부

현재 전자발찌는 스페인 평등부 소속 가정폭력전담국(Delegación del Gobierno para la Violencia de Género)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가해자

와 피해자의 위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COMETA라고 불리는 통제센터 운영은 다국적 보안전문 업체인 Securitas Direct社가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기준 731쌍의 가·피해자가 전자발찌 및 피해자용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다.⁴⁸⁾

48) Jorge Zurita Bayina, ob. cit. p.35.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문명화된 모든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아동,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만큼은 사회적 인식변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계기로 가정폭력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의 문제에서 경찰이나 관련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공적 문제, 특히 범죄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나 각 종 조사결과 가정폭력 피해는 가정 내에 잠재되어 있었을 뿐 결코 줄거나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이에 2013년부터는 가정폭력을 사회의 주요 악으로 규정하여 경찰을 비롯한 관련 부처가 적극대응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4대악 척결을 위한 치안정책의 수립에 작은 도움이라도 더하기 위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마초주의 전통의 잔재로 가정폭력이 문제화 되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스페인의 대책들을 개략적이거나 짚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스페인의 제도들 중 특히 피해자 위험성 평가 체계나 위험성의 단계에 따른 경찰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 등은 우리 치안정책에 그대로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임시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보호명령의 절차에서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이 보인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2. 정책 제언

가. 체계적인 피해자 위험성 평가 시스템의 도입 및 다 기관 협력체계(가정폭력 Solution Team)의 내실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체계의 도입은 이미 지난 2013 년도에 본인이 작성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책제언으로 제시한 바 있다.⁴⁹⁾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비단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⁵⁰⁾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제로써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률 감소와 함께 아래 표와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발 우려 가정을 선정하여 ‘112신고 관리 시스템’에 입력, 피해자가 재차 신고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¹⁾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 재발 우려 가정 선정 요소가 과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나 신고경력 정도로 단지 폭력피해 재발시 신속한 경찰출동을 통한 1차적 응급조치를 위한 것이지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49) 신동욱,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치안정책연구소 책임 연구과제, 2013, 37-38쪽.

50) 김한균,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 영국 MARAC의 경우, 형사정책 주요동향, 형사정책연구원, 2011, 18-20쪽/ 경찰청, 앞의 책, 경찰청 외사국, 21쪽.

51) 경찰청,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업무 매뉴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014, 10쪽.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

<표 15>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선정 시 착안사항

- ▶ 최근 1년간 2회 이상 가정폭력 신고(오인·중복신고 제외) 또는 현장출동이 있는 경우
- ▶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피해 조사(2회 이상)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담소·보호시설·임시보호소 등에 연계된 피해자

※ 출처 : 경찰청,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업무 매뉴얼

이 밖에도 경찰은 2014년부터 경찰서별로 「가정폭력 Solution Team」을 구성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Solution Team」은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 또는 생활안전 과장을 팀장으로하여 형사(수사) 팀장 및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내부 구성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의료기관 등 종사 중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⁵²⁾ 이른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치안정책”을 주제로 경찰대학이 주최한 제3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에서 가정폭력 세션의 발표를 맡은 영국 포츠머스 대학의 Mark Button교수가 제시한 영국의 핵심적인 가정폭력 대응 정책도 바로 다기관 협력관계(Multi-agency Partnership)였다. 그에 따르면 가정폭력 방지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가진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며, 경찰은 이중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주택, 교육 등 지방정부에도 핵심적인 부서들이 있으며 여러 기관들이 함께 테이블에 모여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나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⁵³⁾

52) 경찰청, 앞의 매뉴얼, 12쪽.

물론 이러한 공식적인 협력 기구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과 관련 NGO,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요사건에 있어서 각각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해왔으나, 이제 초기단계이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가정폭력 Solution Team」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4대 사회악 척결 중 가정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정책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가정폭력 해결방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몇 가지 개선점을 지적하자면, 우선 「가정폭력 Solution Team」에서 다루는 피해자는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매월 또는 수시로 관내의 가정폭력 사건을 분석하여 재발우려가 높고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도록 하고 있다.⁵⁴⁾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즉 객관적인 피해자 위험 평가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여 지속적인 위험성 평가와 지원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여 경찰기구도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영국과는 달리 국가경찰제를 운영 중인 한국의 실정상 시행 초기에는 4대 사회악 근절이 국가정책임을 이유로 자치단체 등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나, 앞으로 4대 사회악 근절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면 경찰을 중심으로 계속 이러한 다기관 협력체제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정폭력 Solution Team」이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다양한 지원수단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명문화하여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접근금지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습가해자

53) 경찰대학,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치안정책 -외국의 선진제도 고찰을 통한 비교연구-, 경찰대학 제3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13, 110-111쪽.

54) 경찰청, 앞의 매뉴얼, 12쪽.

전자발찌 착용

2008년 9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된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자발찌부착 제도를 통해 2014년 6월 16일 현재 1,885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범이 1,561명, 살인범이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이 3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자발찌 부착은 그 동안 성폭력범(2008년), 미성년자 유괴범(2009년), 살인범(2010년)으로 그 부착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며, 2014년 6월 19일부터는 상습강도죄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서 시행 전인 14.1%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⁵⁵⁾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재범률이 2012년에 32.2%로 보고되는 등 폭력의 상습화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 중 가정폭력의 경우 재범률 감소를 목표로 하여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2013년에는 재범률을 11.8%까지 낮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⁵⁶⁾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그 심각성과 폭력의 상습성에 비추어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이 되는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전자발찌 착용도 검토할 만하다. 현재는 접근금지 명령 등에 대한 임시조치의 경우 가해자가 해당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재차 신고가 없는 경우에 있어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및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가특법 제55조의5).

55)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보도자료, 2014. 6. 16.

56) 경찰청, 2014년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계획, 2014, 20쪽.

가해자에게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의 준수 실효성을 담보하고, 피해자에게는 재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보호조치로 전자발찌 착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가정폭력 재범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정비

1)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

다음으로 한국 가특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로 현장 출동 경찰관이 행하는 긴급임시조치, 검사가 신청하는 임시조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진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으로 실제 보호조치의 내용이 유사하나 제도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1997년 제정당시에는 임시조치만 있던 것이,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부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보호의 공백상태에 놓이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2011년 현장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추가로 신설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가해자가 위배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의견제출기한 10일,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60일,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는 시간 14일 등 적어도 총 84일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

고 있다.⁵⁷⁾ 물론, 긴급임시조치를 한때는 통상의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이러한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뿐만 아니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가능하겠지만 이는 긴급임시조치가 없던 때에도 가능한 제재였다는 점에서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다.

또한 현행 피해자 보호명령의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 위반과는 달리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방어하면서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쉽지않음을 짐작할 수 있고, 가특법에서 특별히 법원의 보호명령에 대한 심리, 결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임시보호명령과 그 명령의 결정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⁵⁸⁾

2)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일원화 : 위반 시 엄격한 제재와 결정과정의 신속성 담보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위반 시의 엄격한 제재와 신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결정을 형사벌이 징역, 벌금 등으로 변경하여 위반 시 현행범 체포가 가능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기존 입법의 태도로 보아 경찰관의 결정인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나 보호처분과 같은 종국적인 결정이라고 보

57) 성홍재, 앞의 논문, 196-197쪽.

58) 성홍재, 위의 논문, 198쪽.

지 않는 임시조치의 경우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보는 입장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제도를 단일화 하여 복잡한 규정들은 단순화 하고 벌칙규정을 통한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스페인과 같이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기간 제한을 신설하여 긴급임시조치와 같은 효과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명령 신청서를 접수한때로부터 72시간이내에 보호명령의 결정을 위한 심리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미 한국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전 피의자신문절차(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등에서 법원의 심리개시에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가폭법이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는 점(법 제1조)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도 구속전 피의자신문절차를 본받아 심리개시의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심문하여 결정한다면 보호명령의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심문을 통해 가해자의 경우 법관의 면전에서 자신의 행위와 이에 대한 반성 및 항변의 과정을 통해 종국적으로 결정되는 보호명령에 보다 수긍하여 불복심리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경찰이 결정한 긴급임시조치가 119건이며, 경찰이 신청한 임시조치 건수가 702건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제도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단일화 하여 법원이 모두 결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업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모든 구속영장에 대해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정폭력과 관련한 보호명령 심사의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

법 27/2003, 7월 3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

Jefatura del Estado

행정부

«BOE» núm. 183, de 1 de agosto de 2003

관보 제183호, 2003년 8월 1일

Referencia: BOE-A-2003-15411

개정내용 적용본

최종 개정 : 개정 없음

JUAN CARLOS I REY DE ESPAÑA

후안 카를로스 1세, 스페인 국왕

본 법률을 보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의결되고 제가 공포하였음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법률 제정 동기

I

가정에서 행하여진 폭력, 특히 성별간의 폭력은 모든 공공기관들의 협조와 전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들이 초래하는 상황은 순수한 가정환경에서 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습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장래에 보다 심각한 행위로 악화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초기부터 근절할 수 있는 새롭고도 보다 효과적인 사법적이며 기술적으로 연결된 수단들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새로운 폭력의 행사를 방지하는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보호조치들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립무원상태를 회피하고 그들의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주는 민사적이며 사회적인 보호조치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종합적이며 조정된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난 2002년 10월 22일, 의회는 사회정책과 취업위원회 산하에 “...성별간 폭력의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소위원회의 가장 두드러진 결론 중 법무부의 지원으로 제안된 피해자를 위한 보호명령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수단의 신설과 조정이 명확하게 돋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전문가 및 정부(사법위원회, 여성연구소, 검찰부 등), 국제기구(UN, 유럽위원회, EU의 기구들)의 다양한 문서와 보고서에서 나타났던 불안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한 불안은 의회의 여성권리 혼합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서 “...절대적 우선순위로서의 종합적인 대응과 조정의 필요성...” 으로 나타났다. 이 법률은 그러한 의회의 만장일치 명령의 실현인 것이다.

II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은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서로 다른 지원과 보호의 도구들을 하나로 단일화한 것이다. 예심판사에게 심리된 신속하고 간단한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민사적이며 형사적인 보호조치들이 집약된 종합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가해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과 해당되는 가사소송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전과 안정,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들을 하나로 통합한 하나의 법적 해결책인 것이다. 동시에 보호의 사법명령은 다양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들이 그들의 사법적 체계에 정립되어 있는 사회보호 조치들을 즉시적으로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보다 혁신적인 요소인 것이다.

보호명령에 포함된 조치들을 효율화할 목적으로, 모든 가정폭력의 피

해자들이 특히 간단하고, 접근가능한 절차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자는 물론, 법적 대리인 또는 전체 가족의 구성원이 기술적 형식주의 및 추가 비용 없이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보호명령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보호조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보호명령은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특정 범죄 및 위경죄에 대한 신속한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Ley 38/2002, de 24 de octubre, por la que se regula el procedimiento de enjuiciamiento rápido de determinados delitos y faltas)의 연장선상에서 보호명령의 결정을 당번 예심판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사법적 결정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최소의 혼란 속에 심리되어야 하는 것이 그 본질이며 성질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법심리는 가해행위의 중대성과 발생한 사정들을 통해 타당한 경우 용의자를 형사소송법 제504조의 2에 따라 진행하고, 신속형사 절차 또는 경우에 따라 위경죄 처리 절차에 규정된 사유들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798조의 심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끝으로, 본 신법은 중앙등록소(Registro Central)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판사와 법원에 의해 결정된 보호명령들의 즉각적인 접수와 그러한 범죄와 위경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들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 1 조.

형사소송법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초기 수사절차들로는 멸실 가능한 증거의 보존, 범인의 동일성식별과 대조를 위한 증거의 수집과 보관,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에 책임 있는 용의자의 체포와 이 법 제544조의 2 또는 제544조에서 언급한 보호명령의 결정을 통한 그 범인에 의한 피공격자, 피해자, 그들 가족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보호가 있다.》

제 2 조.

형사소송법에 제544조의 3을 아래와 같이 새롭게 추가한다.

《1. 예심판사(Juez de instrucción)는 형법 제153조에 열거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명과 물리적·정신적 완전성, 성적자유, 자유 또는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위경죄 실행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존재하고, 피해자에게 객관적 위험상황을 초래하여 본 조에 규정된 보호대책들의 적용을 필요로 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을 발한다.

2. 보호명령은 판사 직권 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전항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 또는 검찰부의 요청에 의해 결정한다.

이 법 제262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전조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공사의 보호지원기구는 그러한 사실을 당번판사(juez de guardia) 또는 검찰부에 통보하여 보호명령의 절차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3. 보호명령은 법무부, 검찰부 또는 공권력기관(경찰), 피해자지원사

무소, 공공서비스기관, 독립적 지원기구들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신청은 권한 있는 판사에게 신속히 송부되어야 한다.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야기된 경우 신청을 접수한 판사는 장래 권한 있는 판사에게 이송될지라도 보호명령의 결정절차를 개시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언급된 사회서비스기구와 기관들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보호명령신청서와 정보 및 각종 양식들,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행정기관과 검찰부의 전기통신채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경우의 보호명령신청서를 접수한 당판사는 긴급심문(audiencia urgente)에 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 보호명령 신청자, 가해자, 그 조력인,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부도 소집하여야 한다.

이 심문에서 해당자의 소집이 적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504조의 2 2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4권 제3편에 규정된 절차에 적합한 사유의 경우 제798조의 심문과 경우에 따라서는 위경죄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심리한다. 예외적으로 근무 시간 중 심문절차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판사는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심문을 소집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심문은 신청서 제출로부터 최대 72시간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심문동안 판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의 자녀 및 나머지 가족들과의 대면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심문절차에서 진술은 분리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개최된 심문에서 판사는 보호명령신청과 내용, 포함될 보호대책들의 효력에 대해 결정하여야한다. 이에 불구하고, 예심판사는 제544조의 2에 규정된 조치들을 소송절차의 어느 순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5. 보호명령은 제1항에서 언급된 행위들의 피해자에게 본조의 민사적, 형사적 명령의 보호조치와 기타의 법적 규정에서 정한 보조적 지원들과 사회보호적 조치들을 포함하는 종합적 방안을 부여한다.

보호명령은 어떠한 권한과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효력을 가진다.

6. 형법적 성격의 보호조치들은 형사소송 법제에 포함된 모든 조치들을 사용할 수 있다. 보호조치들의 조건, 내용과 효력의 일반적 성격은 본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예심판사(juez de instrucción)는 피해자에 대한 전체적이며 즉각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적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들이 있는 경우 민사법적 기관에 의한 사전 결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Código Civil) 제158조에 불구하고, 민사적 성질의 보호조치들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찰부의 신청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거의 공유와 향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통신, 체류, 음식의 제공, 또한 미성년자를 어떠한 위험이나 선입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모든 조치들을 포함한다.

보호명령에 포함된 민사적 보호조치들은 30일의 임시유효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으로 민사소송 절차

가 시작될 경우 보호명령에 포함된 조치들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의 범위에서 효력이 지속된다. 민사적 보호조치들은 이 기간 동안 최초 신청 받은 권한 있는 판사에 의해 승인, 수정, 취소되어야한다.

8. 판사는 즉시 결정서정본으로 보호명령을 당사자, 피해자와 보호조치의 집행을 위한 안전, 사회지원, 법률지원, 보건 및 심리, 기타 이러한 성질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들에 공지, 통지하여야한다. 통지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행정적 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9. 보호명령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소송절차 진행상황과 결정된 보호조치들의 범위와 효력에 관한 지속적인 통지의무를 포함한다. 특히, 피해자는 항상 가해자의 교정상황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정행정기관에 보호명령을 통지하여야한다.

10.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등록소(el Registro Central para la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에 보호명령은 등록되어야한다.

11. 형사절차 진행 중에 본조 1항에 열거된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대해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인정한 판사나 법원은 전항들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정부는 사법위원회와 정보보호청에 의한 법무부의 제안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등록소에 관한 규칙과 동 등록소의 정보등록 체계와 삭제 및 정보접근에 관한 규칙을 발령하여야 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부칙 제 2 조.

이 법의 적용은 사법위원회, 검찰부, 법률전문가, 법무부, 내무부, 노동부, 복지부의 대표자 및 주정부, 기초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종합위원회에 의한다.

이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을 위한 일반적 범위의 규약을 기획하고 판사, 법원, 권한 있는 공공행정기관에 의해 채택된 보호와 안전에 관한 조치들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정 수단의 채택을 담당한다.

최종 부칙.

이 법은 관보에 공포되는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모든 스페인 시민과 공사기관은 이 법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팔마 데 마요르카, 2003년 7월 31일

후안 카를로스 국왕

정부 총리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로페즈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여성가족부,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0.

_____,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3.

2. 논문

김한균,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 영국 MARAC의 경우, 형사정책 주요동향, 형사정책연구원, 2011.

백승흠, 가정폭력 관련법률에 관한 고찰 - 경찰의 긴급조치 등 보호명령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4호, 2008.

성홍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3호, 2011.

신동욱,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과제, 2013.

표창원, “영국사례의 검토를 통한 한국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안”,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2000.

3. 기타

경찰청, 2014년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계획, 2014.

_____, 각국의 가정폭력 실태 및 대책, 경찰청 외사국, 2006.

_____,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업무 매뉴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014.

_____,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 4대 사회악 근절 종합 매뉴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013.

경찰대학,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치안정책 - 외국의 선진 제도 고찰을 통한 비교연구 -, 경찰대학 제3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13.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보도자료, 2014. 6. 16.

한국여성의전화, 2012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20명, 보도자료, 2013. 7.

_____, 2013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보도자료, 2014. 4.

II. 외국문헌

1. 논문

Francisco Javier Virseda Serna, Prevención y Gestión del Riego. Análisis de Buenas Prácticas, III Congreso para el estudio de la violencia contra las mujeres, 2012.

Jorge Zurita Bayina, la lucha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Seguridad y Ciudadanía: Revista del Ministerio del Interior, N. 9, enero-junio, 2013.

Joaquín Delgado Martín,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violencia doméstica, revista xurídica galega, 2003.

_____,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violencia doméstica, Encuentros “Violencia doméstica”, 2004.

María Acale Sánchez, Análisis del Código Penal en materia de Violencia de Género contra las Mujeres desde una Perspectiva Transversal, REDUR 7, 2007.

Patricia Faraldo Cabana, Razones para la introducción de la perspectiva de género en Derecho penal a través de la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sobr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Revista penal N°17, 2006.

Patricia Laurenzo Copello, LA VIOLENCIA DE GÉNERO EN LA LEY INTEGRAL : Valoración político-criminal, 2005.

2. 기타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Protocolo para la implantación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violencia doméstica. 2003.

Gobierno de Canarias, Guía de Recomendaciones para la Actuación de las Policías Local en los Casos de Violencia de Género dentro del Ámbito de la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2007.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Mujeres y hombres en España, 2013.

Jefatura del Estado, «BOE» núm. 313, de 29 de diciembre de 2004, Referencia: BOE-A-2004-21760.

Ministero de justicia, Protocolo de actuación para la implantación del sistema de seguimiento por medios telemáticos del cumplimiento de las medidas de alejamiento en materia de violencia de género.

Ministerio de Sanidad, Servicios Sociales e Igualdad, Estrategia para la erradicación de la violencia contra las mujeres 2013-2016, 2013.

_____ , Guía de los derechos de las mujeres víctimas de violencia de género.

_____ , Informe 2007-2012, Servicio 016 de información y asesoramiento jurídico en materia de violencia de género.

Orden INT/1202/2011, de 4 de mayo, por la que se regula los ficheros de datos de carácter personal del Ministerio del Interior. Boleín Oficial del Estado Núm. 114.

III. 기타

스페인 관보

<http://www.boe.es/>

Ministerio del Interior (내무부)

<http://www.interior.gob.es/>

Cuerpo Nacional de Policía (국립경찰)

<http://www.policia.es/>

Web Oficial de la Guardia Civil (군경찰)

<http://www.guardiacivil.es/es/>

Ministerio de Sanidad, Servicios Sociales e Igualdad(평등부)

<https://www.msssi.gob.es/>

Ministerio de Justicia (법무부)

<http://www.mjusticia.gob.es/cs/Satellite/es/1200666550194/DetalleInicio.html>

책임연구보고서 2014-09

스페인의 가정폭력 대책 고찰을 통한 한국경찰의 대응방안 모색

2015년 3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